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접수번호  |  | 접수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제출인   | 상호: (유)승후건설  |     | 사업자등록번호: 323-88-00288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주소: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0번지 4층 (전화번호: 063-561-3235)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건축물   | 건물명: 왕신여중고등학교  |     | 위 치: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연면적(m <sup>2</sup> ): M2   |     | 작업기간: 2019-07-15 ~ 2019-08-30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<sup>2</sup> )·부피(m <sup>3</sup> )]: 853.74 M2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측정기관  | 대표자: 김재용   |     | 사업자등록번호: 418-81-35806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주소: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7, 2층 201호 (전화번호: 063-245-2501)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측정일시  | 2019년 07월 24일 (측정시간 10:30 ~13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측정결과  | 시료번호   |     | 측정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측정결과(f/cc) | 검출석면  |
|   | 1  | #1  | 부지경계선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4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| 2  | #2  | 부지경계선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불검출   |
|   | 3  | #3  | 부지경계선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2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| 4  | #4  | 부지경계선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| 불검출   |
|   | 5  | #1  | 음압기출구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3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| 6  | #1  | 위생시설주변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3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| 7  | #1  | 폐기물반출구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2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<br>별첨1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<p>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9년 07월 24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인: (유)승후건설 (서명 또는 인)</p>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<b>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b>   |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
「별첨1」

측정장소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



[ 개별 석면 해체 · 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]

| 구분  | 지점      | 지점수      | 시료측정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작업장 | 부지경계선   | 4개 이상    | 부지경계선<br>높이 1.2-1.5m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| 위생설비입구  | 전수(1개이상) | 위생설비 입구<br>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| 작업장 주변  | 실내       | 1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장 주변<br>높이 1.2-1.5m         |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<br>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|     |         | 실외       | 1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건축물 외부<br>높이 1.2-1.5m      | - 대상 건물주변 5m 이내<br>- 음압기설치/부지경계선이 건물5M이내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음압기     | 전수(1개이상) | 음압기 공기 배출구<br>0.3-1m이내        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   |
|     | 폐기물 반출구 | 전수(1개이상) | 폐기물 반출구에서<br>1m이내, 높이 1.2-1.5m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# 분 석 결 과 표

## 1. 개 요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 또는 의뢰자   | (유)승후건설       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|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0번지 4층 |
| 시 료 채 취 장 소 |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   |
| 당해 현장 조사일   | 2019년 7월 24일            |
| 시 료 분 석 일 자 | 2019년 7월 24일            |
| 분석보고서 일련번호  | gum 7/24 비2             |

## 2. 분 석 결 과

: 분석방법: 위상차현미경(PCM) 검측

| NO | 채취위치   | 시료명 | 측정시간(분) | 유량(L/min) | 측정농도(개/cm3) | 초과여부  |
|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1  | 부지경계선  | #1  | 180     | 14        | 0.004       | 기준치이하 |
| 2  | 부지경계선  | #2  | 180     | 14        | -           | 불검출   |
| 3  | 부지경계선  | #3  | 180     | 14        | 0.002       | 기준치이하 |
| 4  | 부지경계선  | #4  | 180     | 14        | -           | 불검출   |
| 5  | 음압기출구  | #1  | 30      | 14        | 0.003       | 기준치이하 |
| 6  | 위생시설주변 | #1  | 30      | 14        | 0.003       | 기준치이하 |
| 7  | 폐기물반출구 | #1  | 30      | 14        | 0.002       | 기준치이하 |
|    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
|    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
|    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
|    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
|    |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|

### ※ 참고

- 비산정도기준: 0.01개/cm3 이하
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하되,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 유량을 조정함.
-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시 종료가함.
- \* 본 분석자료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“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”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2012-7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,

(유)금강석면연구소



▣ 비산시료 채취 사진대지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시료채취일자  | 2019년 07월 24일        | 시료채취개수 | 7 EA |
| 현 장 주 소 |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|        |      |

|      |   |   |  |   |
|------|---|---|--|---|
| 채취위치 | 부지경계선   | 부지경계선   | 부지경계선  | 부지경계선   |
| 시료번호 | #1  | #2  | #3   | #4  |
| 결 과  | 기준치이하   | 불검출   | 기준치이하  | 불검출   |
| 사진대지 |    |    |    |  |
| 채취위치 | 음압기출구   | 위생시설주변  | 폐기물반출구   |   |
| 시료번호 | #1  | #1  | #1   |   |
| 결 과  | 기준치이하   | 기준치이하   | 기준치이하  |   |
| 사진대지 |  |  |  |   |
| 채취위치 |   |   |  |   |
| 시료번호 |   |   |  |   |
| 결 과  |   |   |  |   |
| 사진대지 |   |   |  |   |

제2011-120009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기관명   | (유) 금강석면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소재지   | (561-223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-81번지 상가2층 205호 |                   |
| 대표자성명 | 김재용   |                   |
| 지정사항  | 총 대행(지정) 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 |
|       | 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 |
|       | 대행(지정)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국                |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9. 9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

